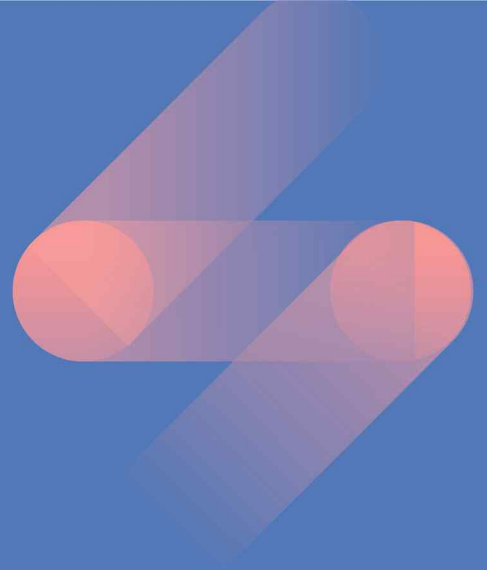


2024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02

제 2 부

주요 언론조정사례

제3장 추후보도문 게재 사례

추후보도문 게재 사례

추후보도 사례 01 2024강원조정9·10 추후·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추후 및 반론보도, 열람차단)

학원 강사가 수강생들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와 관련, 원 보도를 열람차단하고 무죄판결 사실과 신청인의 입장을 반영한 추후 및 반론보도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학원 강사인 신청인이 10대 원생들을 대상으로 폭행, 폭언 등을 일삼는 한편, 불공정하게 학원을 운영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어 관계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항소심 재판부가 학생들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었고, 그 진술이 허위 또는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청인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아동학대 민원 조사 단계에서 기사를 송출함으로써 지역 내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신청인과 신청인이 소속된 학원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매출이 급감하게 돼 결국 폐원했다며 추후보도와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자신을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신청인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신청인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이의신청한 바 있고, 보도를 작성한 기자와 피해자 학생들의 어머니가 지인 관계라며, 피신청인의 보도는 사적 관계에 근거해 일방의 입장만 반영한 편파보도라고 반박했다.

중재부는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양 당사자의 주장을 반영하는 조정안을 먼저 제안한 후, 중재부가 제안한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가 재차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양 당사자의 입장을 좁히는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조정 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무죄판결에 대한 추후보도 게재를 수용함과 동시에, 금전배상이 어렵다면 직접적인 사과를 원한다는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유감을 표명했다. 또 '신청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중재부의 조언에 따라 조정대상보도의 열람과 검색을 차단하는 조정안에도 동의하여 양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들은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사항

추후 및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추후 및 반론보도] ○○ 소재 U학원 아동학대 혐의 무죄로 밝혀져

본문내용: 본지는 2021년 6월 22일 자 「[단독] ○○시 학생이라는 이유로 폭언을 감내해야만 하는가?」 제하의 기사 등에서 강원 ○○ 소재 U학원 강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민원이 제기되어 관계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 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와 학부모회연합회가 해당 학원 및 언어폭력을 한 학원강사에 대해 공정한 처벌과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2월 14일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원심판결 중 학원강사 A 씨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초기 진술에서 A 씨가 책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때리는 등의 피해사실에 대한 언급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행동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도 확보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진술 중 일부 딱밤을 때렸거나 뽕망치로 때렸다는 부분의 진술 내용만으로 A 씨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한 지역 매체에서 나를 아동학대범으로 보도했고, 제1심 판결 이후에는 학원을 폐원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선생님이라는 직업 말고는 다른 직업을 생각해본 적도 없기에 최소한의 생계만 이어갈 수 있다면 힘겨워도 명예 회복을 꼭 하고 싶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경제·사회면의 첫 번째 이미지 기사 및 속보란)에 추후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추후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경제·사회면의 첫 번째 이미지 기사는 최초 24시간 동안 초기화면에 고정하여 게재하고,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열람차단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들의 열람 및 검색을 모두 차단한다.

추후보도 사례 02 2024경기조정200·201 추후·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취하(추후보도)

모 공공기관이 출자한 회사의 대표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해당 대표에게 누설하여 정보공개 청구인이 해당 대표 등으로부터 협박과 조직적 따돌림을 당했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대표의 협박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되자 이를 알리는 추후보도문을 게재하여 취하된 사례

보도내용

A 기관이 출자한 회사의 대표와 관련하여 급여 및 법인카드 사용명세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자, 그 사실을 당사자인 대표 B 씨에게 누설하였다. 그로 인해 B 씨와 같은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정보공개 청구인은 B 씨로부터 협박과 조직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며 대표직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른 시민단체와 함께 진행했다.

신청이유

공공기관 출자회사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신청인은 자신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A 기관이 정보공개법 및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사실확인을 위해 당사자인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서 하단에도 '정보의 내용이 제삼자와 관련 있을 경우 제삼자에게 통지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으므로 정보공개청구 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보도 직후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고, 반론보도로 합의가 되어 보도가 이행된 바 있다. 이후 경찰이 협박 혐의에 관해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을 하였기에 이를 알리고자 추후보도와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신청인은 본 조정사건 이전에 9개 매체의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각 사건은 조정성립(반론보도, 기타) 또는 취하(반론보도)로 종결되어 해당 보도로 인한 피해가 모두 구제되었음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심리가 개최되기 전 불송치결정을 명시한 추후보도문을 게재함과 동시에 조정대상보도 하단에도 기존 반론보도문에 이어서 추후보도문을 게재한바, 신청인은 만족하고 취하했다.

※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 이외 다른 5개 매체의 기사에 대해서도 추후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각 사건은 모두 취하(추후보도)로 종결되어 해당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모두 구제되었음

조정대상보도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와 ○○결재원 정보공개 진상규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28일 △△ ○○○○결재원 본사 앞에서 ‘○○○○결재원장과 □□□□ 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단체들은 지난 2023년 12월 12일 ○○○○결재원(이하 ○○원)에 ○○원 자회사 □□□□ 대표 급여 및 성과급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해 비공개 처리됐다. 이어 2024년 4월 3일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 정보를 요청, 부존재 통보를 받았다. 같은 달 9일 신청한 근무에 관한 정보공개사항은 공개됐다.

이와 관련 단체들은 “정보공개에 대한 ○○원의 비공개, 부존재 등은 제 식구 감싸기”라며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정보공개 자료를 당사자인 □□□□ 대표에게 넘겨 제삼의 여성 피해자가 협박과 함께 조직적 따돌림 등 심각한 인권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략]**

여성 피해자는 “□□□□ 대표가 이사장인 (사)◇◇◇◇◇◇국민연대 이사”라며 “그 단체 카톡방 등에서 협박, 조직적 따돌림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카톡 내용을 공개했다. **[후략]**

게재보도문

추후보도문

보도제목: 「시민단체, “○○원 100% 출자회사 □□□□ 대표, ○○원장 사퇴 촉구”」 기사 관련

본문내용: 본지는 5월 31일 「시민단체, “○○원 100% 출자회사 □□□□ 대표, ○○원장 사퇴 촉구”」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결재원에 요청한 정보공개 요청 처리 절차 과정이 잘못되고, □□□□ 대표가 여성 이사에게 협박과 조직적 따돌림 등의 행위를 근거로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을 보도하여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 협박과 관련된 행위로 판단할 증거 자료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기사에서 주장하는 협박, 조직적 따돌림 등의 행위는 당사자 확인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하여 보도된 것으로, 여러 차례에 거친 경찰조사로 이어지게 되면서 심각한 정신적, 재물적 피해를 입히는 잘못된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바로잡습니다.

추후보도 사례 03 2024서울조정2102·2103·2104/2105·2106·2107 각 정정·추후·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일간신문, 인터넷신문 ⁸⁾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반론 및 추후보도, 손해배상 50만 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승진을 위해 공문서를 변조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와 관련, 경찰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됐음을 반영한 정정, 반론 및 추후보도와 50만 원의 손해배상이 함께 이루어진 사례

보도내용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승진을 위해 공문서(상장)를 변조하였고, 연구기관이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해당 연구원을 승진시켰다. 기관 내부에서 심사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일자 연구기관은 다시 법적 자문을 받았고, 결국 해당 연구원을 공문서 변조와 변조 공문서 부정행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공문서 변조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했으며, 본인은 해당 혐의에 대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없음을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보도 이후 온라인에서 이어진 무차별적 비난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어 구직 활동도 곤란하다며, 매체별로 정정보도 및 추후보도와 총 1,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조정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연구원 내부 관계자와 연구원 노조에서 제보한 성명서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였고, 조정신청 이후에 연구원 노조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여 기사 내용에 잘못된 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성명을 익명으로 처리했으며, 연구원 관계자의 멘트를 통해 신청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중재부는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은 점, 혐의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점, 익명 처리에도 불구하고

8) 동일한 언론사가 발행하는 매체임

신청인이 특정된 점 등을 짚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수사기관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추후보도 등을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신청인은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피신청인도 소정의 금액이라면 손해배상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양 당사자는 중재부가 제시한 보도문과 상호 간 논의한 손해배상액에 합의하여 정정·반론·추후보도와 손해배상액 50만 원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①·③ **[전략]** 10일 ○○연에 따르면 ○○연 소속 A 연구원은 이달 선임급에서 책임급 승급 심사를 앞두고 가점을 받기 위해 자신이 포함된 단체가 받은 상을 개인상으로 변조해 승급심사 증빙서류로 제출했다.

○○연 내부규정에 따르면 승급 심사 시 단체상이 아닌 개인상만 포상 실적에 포함돼 가점이 주어진다. A 연구원은 이 점을 고려해 단체상 수상자에 포함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지우고, 자신이 단독으로 받은 상처럼 변조했다. 이후 인사 부서에서 서류 변조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직원은 다시 변조한 내용을 무단 삭제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략]**

○○연 관계자는 "승급 심사 대상 포함 여부를 놓고 인사위원 간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오갔다"며 "해당 직원이 변조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가점 신청을 자진 회수한 점, 수상 실적이 승진평가 점수에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결국 승급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승급 심사에서 해당 직원은 승진 하한 점수를 초과해 최종 승진 대상자에 포함됐다. **[후략]**

②·④ ○○○○○○연구원이 승급 심사를 위해 포상 실적 서류를 변조해 제출했다가 적발된 A 책임연구원을 경찰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은 증빙서류를 위조한 A 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음에도 승급 심사 대상자에 포함시켜 기관 내부에서 공정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17일 ○○연에 따르면 이 기관은 승급 심사에서 가점을 얻기 위해 포상 서류를 변조한 A 씨를 지난 12일 △△ □□경찰서에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중략]**

A 씨는 이달 초 진행된 선임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 승급 심사에서 자신과 동료가 공동 수상한 포상 명단 중 상대방의 이름을 지우고 본인 혼자 받은 것처럼 변조해 인사부서에 제출했다가 확인 과정에서 적발됐다. ○○연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감사부의 감사를 통해 A 씨가 포상자 이름을 변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후략]**

제3장

추후보도문 게재 사례

조정성립사항

정정·반론 및 추후보도문

보도제목: [정정·반론 및 추후보도문] <승급 심사자료 변조 논란 ○○연 직원, "무혐의"로 밝혀져>

본문내용: 본 신문은 지난 2024년 3월 11일과 18일 ◇◇◇타임스 IT과학면과 3월 10일과 17일 인터넷 ◇◇◇타임스 ICT과학면에 <승급 심사자료 변조 직원 승진… 공정성 논란 쏟아올린 ○○연>, <○○○○연 연구자, 승진 서류 변조로 경찰 고발> 등 제목의 기사에서 A 연구원이 승급심사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 단체상을 개인상으로 변조 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최종 승진됐다고 보도하면서 ○○연이 공정성 논란을 빚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공문서 변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공문서 변조 등과 관련해 △△ □□경찰서 수사 결과, ○○연이 A 연구원을 상대로 고발한 사안은 지난 6월 13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A 연구원은 “승진과 상관없이 대외에서 상장을 수상하였다는 사실만을 신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공동수상자의 의사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외부인의 성명만을 삭제하였을 뿐, 단체상임을 표시해 제출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대외포상신고서의 오기를 수정하고 첨부 자료를 변경하기 위해 내부 안내 절차에 따라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전산 의뢰서를 제출하였기에 변조 및 무단 삭제가 아니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ICT과학면 기사목록 상단에 정정·반론 및 추후보도문을 24시간 고정하여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반론 및 추후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이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들 본문 하단에 정정·반론 및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단, 상자, 음영, 볼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조치사항을 전송한다.

일부 열람차단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④의 부제목 「…」을 삭제한다.

손해배상

- 피신청인은 2024년 10월 7일(월) 까지 손해배상금으로 금 500,000원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피신청인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납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